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처



1) 개인정보 보유 홈페이지 운영 시 관리적 의무사항 리스트

의무사항	상세	위반 시 벌칙
1.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(법 제3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)	■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 방침 수립 및 공개 > 홈페이지 하단에 '개인정보처리방침'을 명시적으로 공개	1천만원 이하 과태료
2. 개인정보 수집 시 명시적 고지 및 동 의 절차 준수 (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	■ 법적 필수 고지사항 4항목 고지 및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,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,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,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준수	• 수집 시 동의획득 위반 : 5천만원 이하 과태료 • 고지의무 위반 :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3.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준수 (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 한)	■ 회원가입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(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) ■ 법령 근거 없이, 보유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즉시 파기 ■ 본인인증 시 대체수단 지원 > 대체수단의 예 : I-PIN, 휴대폰 인증, 공인인증서 등	• 주민등록번호 유출 : 최대 5억원의 과징금 • 법적 근거없이 주민번호 처리 :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• 대체수단 미지원 : 3천만원 이하 과태료
4. 파기 (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)	■ 보유기간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 시 지체없이 파기 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분리 저장	• 개인정보 미파기 :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• 분리저장 위반 : 1천만원 이하 과태료
5. 개인정보 업무 위탁 절차 준수 (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	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를 외부 업체를 통하여 구축 및 유지보수 하는 경우, 개인정보 업무 위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① 위탁 업무 문서화 처리(계약서 명시) ② 위탁사항 홈페이지 공개(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) ③ 수탁업체 관리·감독	• 업무 위탁 문서화 위반, 업무 위탁 사실 미공개, 수탁 자 관리 소홀 :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처



1) 개인정보 보유 홈페이지 운영 시 기술적 의무사항 리스트

의무사항	상세	위반 시 벌칙
1.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(고시 제4조 접근권한의 관리) (고시 제5조 접근통제)	■ 관리자(홈페이지 개인정보 접근 가능 계정) 페이지 접속 IP 제한 ■ 관리자가 여러 명일 경우, 개별 계정 발급(유지보수 업체 포함) ■ 초기 관리자 ID(admin, manager 등)과 패스워드 사용금지 ■ 로그인 페이지 주소는 유추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변경 ■ 관리자 접근권한 부여/변경/말소 내역 최소 3년 보관	•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• 의무 위반으로 사고발생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
2.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(고시 제7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)	■ 관리자 접속기록 최근 6개월 이상 보관 > 접속기록 항목 ① 관리자 ID ② 접속일시 ③ 접속 IP주소 ④ 수행업무(열람, 수정, 삭제, 인쇄, 입력 등)	
3. 비밀번호 관리 (고시 제4조 접근권한의 관리)	■ 관리자 및 사용자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① 영문자, 숫자, 특수문자 각 하나 이상 포함하여 8자리 이상 ② 영문자, 숫자,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포함하여 10자리 이상 ③ 비밀번호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인 변경 ④ 동일한 비밀번호 사용 제한 (2개의 비밀번호 교대 사용 금지) ※ 위 규칙을 위반할 수 없도록 통제 구현	
4.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(고시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)	■ 암호화 적용대상: 비밀번호, 고유식별정보(주민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번호, 운전면허번호), 바이오정보 ■ 암호화 적용은 전송, 저장 시 암호화 조치 > 전송 시: 보안서버 구축(SSL) 운영 > 저장 시(비밀번호): 일방향 암호화 > 저장 시(고유식별정보, 바이오정보): 양방향 암호화 ※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(국내/국외 연구기관 권고)으로 암호화	
5. 웹 취약점 점검 (고시 제5조 접근통제)	■ 정보통신처의 주기적 보안성 평가 결과 확인 및 개선 ■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 시, 보안 취약점 개선에 대한 사항 명시	서비스 차단 (3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)